

1. 개정 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각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페루 및 캐나다가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각 협정에 따라 수출자로 한정하고,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마련(안 제2조제1호버목·서목, 제4조제

24호·제25호, 제7조제1항제14호·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제19호, 제8조제14항·제15항, 제15조제23항·제24항, 제24조제23호·제24호, 제30조제3항제13호, 제37조제1항제19호·제20호, 별표 15의10, 별표 15의11, 별표 20의6, 별표 20의7, 별지 제24호의1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 신설, 안 제10조제12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항·제6항 및 제37조제2항)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부가 발급한 것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며,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산업부 또는 관세청이 발급한 것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에콰도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
하는 물품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하는 상
용견품(商用見品)·인쇄광고물 등을 포함시킴.

나.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장대상 확대(안 제37조
제2항)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
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캄보디아와
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가
함.

다. 협정과 정합성 정비(안 제7조제2항제5호·제10호, 제9조제7항 및
제30조제1항·제3항·제6항)

- 1) 페루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
· 서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출자로 한정하여 각 협정과 일치시킴.
- 2)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체약상대
국에 필리핀을 추가하여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함.
- 3)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관
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역내협정당사국으
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견품 및 인쇄광고물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14.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토, 자유지역을 포함한 내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그러한 영역과 수역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서. 에콰도르: 에콰도르 헌법에 따라 에콰도르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토, 해양 공간, 인접 도서, 영해, 갈라파고스 제도, 대륙붕, 하층토 및 상공
제4조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0

25.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

1

제7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5.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10호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각각 “수출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19.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제8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⑮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산업부 또는 관세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제5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7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국”으로, “아세안회원국의”를 “계약상대국의”로 한다.

제10조제12항 전단 중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급일”을 “발급일(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협정에 따른 경우에는 발급번호)”로 한다.

제15조에 제23항 및 제2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㉓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3 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㉔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4 서식

2. 제7조제2항제19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24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6조제6항나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4.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

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3.26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 방문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캄보디아·베트남·이스라엘·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호주·뉴질랜드·베트남·중국·이스라엘·중미 공화국들·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주”를 “호주 및 에콰도르”로, “한정하며, 캄보디아·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호까지의”를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같은 조 제4항 중 “중미 공화국들과의”를 “중미 공화국들 및 에콰도르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중미 공화국들·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를 “미합중국으로부터”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캄보디아와의 협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약상대국”을 “체약상대국(제1항에서 회신기간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체약상대국으로 한정한다)”으로,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19.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

세당국이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별표 15의10, 별표 15의11, 별표 20의6, 별표 20의7, 별지 제24호의13 서식 및 별지 제24호의14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버목,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4항, 제10조제12항, 제15조제23항, 제24조제23호, 제25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 제37조제1항제19호, 별표 15의10, 별표 제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3 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다만, 제7조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3.22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인정이 이행되는 날)
2. 제2조제1호서목,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

9호, 제8조제15항, 제15조제24항, 제24조제24호, 제30조제1항·제4항·제6항, 제37조제1항제20호, 제37조제2항, 별표 15의11, 별표 제20의7 및 별지 제24호의14 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에콰도르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 머.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 가. ~ 머. (현행과 같음) 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 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아 랍에미리트연합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을 행사하는 영토, 자유지 역을 포함한 내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그러한 영역과 수역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접속수 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 수역 <u>서. 에콰도르: 에콰도르 헌법</u> <u>에 따라 에콰도르가 국내</u> <u>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u> <u>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u> <u>사할 수 있는 본토, 해양</u> <u>공간, 인접 도서, 영해, 갈</u> <u>라파고스 제도, 대륙붕, 하</u> <u>층토 및 상공</u>
<u><신설></u>	

2. ~ 16. (생략)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 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 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략) <u><신설></u>	2. ~ 16. (현행과 같음)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 -----. 1. ~ 23. (현행과 같음) 24.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 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 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 정기준: 별표 15의10 25.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 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 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 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별표 15의11
<u><신설></u>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 정에 따라 제8조제14항의 발 급기관이 발급한 것 15.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u><신설></u>	

	<u>제8조제1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u>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5. ----- 수출자----- -----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10. ----- 수출자----- -----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8.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u>
<u><신 설></u>	<u>19.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⑬ (생 략)	① ~ ⑬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⑭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부</u>
	<u>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u>
<u><신 설></u>	<u>⑮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산업부 또는 관세청</u>
	<u>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u>

	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⑦ ----- 제5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7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국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⑪ (생 략)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	⑫ -----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이를 대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제15조(계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㉔ (생 략)	----- 발급일(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에 따른 경우에는 발급번호)-----.
<신 설>	제15조(계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㉔ (현행과 같음)
	㉔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3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신 설>	㉔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 22. (생략) <u><신설></u>	<u>24호의14서식</u> 2. 제7조제2항제19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 ----- ----- ----- 1. ~ 22. (현행과 같음) 23.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u><신설></u>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6조제6항나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4.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
---	---	--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 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 9. (생략)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신설>

③ -----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3.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⑤ (생략)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캄보디아·베트남·중국·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④ -----

-----중미 공화국들과
에콰도르와의 -----

-----.

⑤ (현행과 같음)

⑥ -----

-----중미 공화국들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

미합중국으로부터 -----

----- 캄보디아와의 협정 -----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 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7조(채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 신기간) ① 법 제35조제1항제5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37조(채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 신기간) ①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설>	19.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 장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 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 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랍에미 리트연합국의 관세당국이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요

	청한 경우: 에콰도르의 관세당 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 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 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 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 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계약 상대국(제1항에서 회신기간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체 약상대국으로 한정한다)----- --- 제1항-----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